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행정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,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과 중복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조문 삭제(안 제3조)
-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「식품위생법」 과 일치하도록 정비 (안 제4조)
-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 (안 제8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기금 조례안은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,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으로 규정된 조항이 중복됨에 따라,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안 제4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,
 -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와 일치하도록, 안 제5조 중 ‘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’를 ‘회계연도마다’로 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제2항에서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,
 - 안 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제2항 중 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’을 ‘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’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표현하였음.
 - 또한 안 제18조(융자금의 대하)를 안 제18조(융자금의 대여)로, 안 제18조제1항 중 ‘대하하여’를 ‘대여하여’로, 안 제18조제2항 중 ‘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·의무 등’을 ‘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’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으며,
 - 그 밖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없애고 법률용어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, 국민의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진흥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정비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과 중복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조문 삭제(안 제3조)
- 나.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「식품위생법」 과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4조)
- 다.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(안 제8조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17.9.28. ~ 10.18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”을 “제5조 및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이란 법 제47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6. 삭제
7. 삭제
8. 삭제
9. 삭제
10. 삭제

제5조 중 “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4조의 규정”을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융자금의 대하)”를 “(융자금의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하하여”를 “대여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·의무 등”을 “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”로, “영등포구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모범음식점”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구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</p> <p>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</p> <p>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p> <p>4. 그 밖에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수입금 등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제5조 및 제6조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이란 법 제47조제1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구성)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삭제</p> <p>3. 삭제</p> <p>4. 삭제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89</p>

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, 홍보사업 (소비자단체의 교육, 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)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, 활동지원
3.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, 연구사업
4.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5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,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6.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지원
7. 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, 보수를 위한 용자사업
8.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
9. 그 밖에 식품위생, 국민영양,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
10. 기금의 관리,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” 로 한다.

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6. 삭제
7. 삭제
8. 삭제
9. 삭제
10. 삭제

제5조(기금운용의 계획)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① (생략)
② 「지방재정법」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4조(용자계획의 공고)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자총액·용자한도·용자조건·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운용의 계획) -----
회계연도마다-----

-----.

제8조(회계공무원)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지방회계법」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-----
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----

-----.

② --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용자계획의 공고) -----
제4조-----

-----.

제18조(용자금의 대하) ① 구청장은
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
대하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
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
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·의무
등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와 금융
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18조(용자금의 대여) ①-----

대여하여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---

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-----
-----.